2027년 상반기 종료 리더연구
성과 우수과제에 대한 후속지원 안내

□ 지원개요

○ **지원대상**: 2027년 상반기 종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

- 최초신규 또는 후속연구 중 1개만 신청 가능

○ 선정 및 지원 규모

구 분		후속 지원기간	선정규모	연구개시일
리더연구 후속	2월 말 종료과제	3년	신청과제의 20% 내외	2027.3.1.

※ 신청과제가 4개 이하일 경우 우수과제에 한하여 1개 선정 가능. 평가결과 우수 과제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
[참고] 후속연구의 신청 가능 연구기간, 연구비 규모 및 신청분야(CRB)

1. 신청 가능 연구기간

사업구분		신청 가능 연구기간 ※ [붙임2] 신청 대상과제별 지원 가능 연구기간 참고	
리더연구 후속	2월 말 종료과제	3년 이내	
		1차년도	2027.3.1. ~ 2028.2.29.(12개월)
		2차년도	2028.3.1. ~ 2029.2.28.(12개월)
		3차년도	2029.3.1. ~ 2030.2.28.(12개월)

2. 신청 가능 연구비

사업구분	신청 가능 연구비	간접비*
리더연구 후속	직전 수행과제 연평균 연구비(직접비+간접비)의 80% 이내로 직접비만 신청	접수 시 **직접비만 신청**하며, 간접비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산출 후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여 선정 예정

* **직·간접비 분리공고에 따라, 신청 직접비에 조정간접비를 적용하여 총 연구비를 산출**

– 간접비 산출방식: 직접비 50백만원 이하×고시비율×조정비율(50%)+50백만원 초과×고시비율

3. 신청 가능 분야(CRB): 직전 수행과제와 동일한 CRB분야로만 신청 가능

□ 신청 및 수행 제한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

■ 단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**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**
(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도 동일)

○ **개인기초연구 연구책임자 1인 1과제 신청제한 조건**

- **(수행현황에 따른 제한) 개인기초연구** 내에서 **1인 1과제만 수행** 가능
- **(동시신청 제한) 1차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** 중 **1인 1과제만 신청** 가능

※ 단, 리더연구 신규과제(후속신규 or 최초신규) 신청자는 핵심연구 최초신규(유형C, 유형B, 유형A, 도약형 中 1개) 동시신청 가능

○ **기존 최소참여율 적용은 2022년 상반기부터 폐지(계속과제 포함)**

○ **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**

-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
- 단,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**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(기초연구사업 중복수행 불가)**

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

▸**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**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**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** <개정 2022. 2. 28., 2022. 12. 6., 2024. 2. 6.>

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2.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제5조제1호·제2호의 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
4의2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
5.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

가.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
나.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7.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

예외 사항

- **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**
 - (제4호에 따라)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
 - (제7호에 따라)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(직접비+간접비)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('27년~과제 종료 시)
 - *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상기 **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**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, **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**

※ **연구개발과제 수(3책 5공) 초과 여부**는 수행과제 소관 부처 및 주관연구기관에 관계 없이 **연구자를 기준으로 확인 필요**

(예: '홍길동'이란 연구자가 '서울대학교(과기부)' 및 '주식회사 대한민국(산자부)'으로 과제를 수행 중일 때 주관연구기관에 관계 없이 '홍길동'을 기준으로 3책 5공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)

○ **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(PBS) 폐지 출연연 신청 불가**

○ **과제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및 수행 불가**

- 연구지원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연구지원조직을 갖추지 않은 연구개발기관, 영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인증 기관 등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소속의 연구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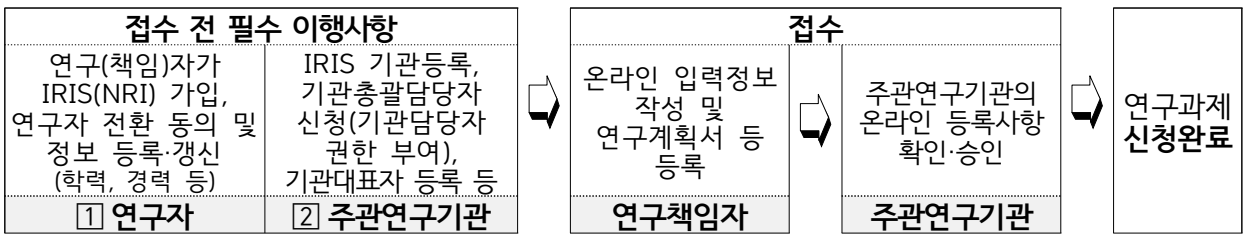
□ 후속연구 신청 시 유의사항

○ 후속연구는 직전 수행과제 성과 우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연구 내용의 연계 필요

○ 후속연구는 연구자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취지상 선정결과에 대한 **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**

□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
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▸**IRIS를 통한 과제신청**을 위한 **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**이 있으니 **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**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**(연구자)**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**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**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**① 및 ②**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**③**: 연구책임자만 필수

2 **(주관연구기관)**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**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**

※ 세부내용은 [붙임3 >별첨(매뉴얼)1-1](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) 및 [붙임3 >별첨(매뉴얼)1-2] (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) 참조 (접수 공고 환경을 통해 '26.11.16(월) 매뉴얼 추가 공지 예정)

▸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, 042-862-1500 또는
IRIS 홈페이지>알림·고객>시스템·서비스문의>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○ 제출자료(온라인 등록)

제출서류	비고
연구성과 요약보고서 및 연구계획서 1부	[붙임2] 서식 확인
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,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	

※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,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[연구개발비] 탭 [연구개발비 사용계획(비목별 연구비 구성)] 중 [(통합)연구시설·장비비]란에 금액만 계상하고, 과제 선정·협약 이후 IRIS의 협약변경을 통한 전문기관 사전승인 필요

○ 신청기간

-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: 2026.11.26.(목) 14:00:00 ~ 12.9.(수) 18:00:00

- 주관연구기관 승인: 2026.11.26.(목) 14:00:00 ~ 12.11.(금) 18:00:00

※ 연구책임자는 상기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일 18:00:00시간까지 계획서 등록(업로드) 및 제출(최종확인 버튼 클릭 후 오류 없는 상태에서 제출버튼 클릭까지)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일 18:00:00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

※ 주의사항: 마감시간 임박 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1~2일 전까지 신청완료 요망

□ 평가절차 및 방법

○ 평가절차

① 연구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	② 평가	③ 선정통보
연구결과 및 연구계획서 제출	연구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서 발표평가	연구자 통보

○ 평가방법: 발표평가

○ 평가 항목 및 지표

평가 항목	평가 지표
연구 목표 달성 수준 및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(가중치 : 70%)	• 연구 목표 달성 수준 –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당초 연구 목표 달성 수준 • 연구 성과의 질적 우수성 수준 – 논문, 특허 등에 대한 연구업적 수준
연구계획서 적절성 및 연구 성과 활용가능성 (가중치 : 30%)	• 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, 연구 방법의 적정성 • 기 수행 연구실적과 후속 연구계획의 연계성 및 발전 가능성 • 제시된 연구 성과의 향후 관련 연구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 여부 •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의 적정성

※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

□ 향후 추진일정

일정	추진내용
2026.12.9.	연구책임자 접수마감
2026.12.11.	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
2027.1월 ~ 2027.2월	후속연구지원 과제 선정평가 실시
2027.2월 말	선정결과 안내
2027.3.1.	선정과제 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문의처

○ **시스템(IRIS, NRI) 관련 문의**

-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 IRIS 운영단 ☎ 1877-2041, 042-862-1500

○ **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**

-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☎ 042-869-(내선번호)

구분	담당 부서	내선번호
		리더연구 후속
연구계획서 작성 및 사업 관련 문의	개인연구지원팀	6813
평가 관련 문의	자연과학단	6558
	생명과학단	6532
	의약학단	6059
	공학단	6543
	ICT·융합연구단	6575